■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3. 3. 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45-82-00410
③ 대표자 성명	정희환	④ 공익법인등 구분	지정기부금
⑤ 전자우편주소	없음	⑥ 사업연도	2025년도
⑦ 전화번호	062-576-7330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2021-6-1
⑨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5 북구종합체육관 1층 북구체육회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0	0	0	9월	13,350,000	8,000,000	5,350,000
2월	0	0	0	10월	10,300,000	7,562,800	2,737,200
3월	3,000,035	0	3,000,035	11월	8,100,000	0	8,100,000
4월	6,000,000	4,000,000	2,000,000	12월	4,000,000	2,987,235	1,012,765
5월	8,000,000	0	8,000,000	합계	44,650,035	40,650,035	4,000,000
6월	0	11,000,000	-11,000,000	차기이월	-	-	4,000,000
7월	0	0	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2025-3	북구태권도협회 대회 운영비	1	금산씨엔씨	3,000,000
2025-4	핑클 축구클럽 운영비	1	㈜원엔지니	3,000,000
2025-4	핑클 축구클럽 운영비	1	선문원	2,000,000
2025-4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잘본한방병원	1,000,000
2025-5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광주바로병원	2,000,000
2025-5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주)금복실업	5,000,000
2025-5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푸른점여행	1,00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신인섭	50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주다인 오광희대표	50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주)금복실업	4,00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김점수	2,00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강재현	1,00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주)한길씨엔씨	50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주)금화	55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이영관(광주바로병원)	4,000,000
2025-9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임일도	300,000
2025-10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주영규	500,000
2025-10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율에스테틱	500,000
2025-10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이명렬	300,000
2025-10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예향수자타	200,000
2025-10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예향포도동명점	200,000
2025-10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예향한우암소생고기	300,000
2025-10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	주영규	200,000
2025-1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광주농협	500,000
2025-1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햇사랑안소명	1,000,000
2025-1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주식회사드림피플엔터	200,000
2025-1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주)삼성철망	300,000
2025-1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김형진(동진종합상사	1,000,000
2025-1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광주미래신협	500,000
2025-1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대웅건설 주식회사	1,000,000
2025-1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1	(유)에스에이치	300,000

2025-10	북구체육회 운영비	1	광주바로병원	500,000
2025-10	북구체육회 운영비	1	㈜영일종합건설	1,000,000
2025-10	북구체육회 운영비	1	잘본한방병원	300,000
2025-10	북구체육회 운영비	1	김창준	500,000
2025-10	북구체육회 운영비	1	박현수	1,000,000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25	북구태권도대회 운영비	1,000	금산씨엔씨	3,000,000
	핑클 축구클럽 운영비	20	㈜원엔지니 외 1	5,000,000
	북구축구협회 대회 운영비	1,200	㈜금복실업 외 17	21,550,000
	북구체육회 대회 운영비	250	잘본한방병원 외 9	7,800,000
	북구체육회 운영비	22	광주바로병원 외 4	3,300,000
합 계		2,492		40,650,000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6 년 1 월 16일

제출인: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인]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 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 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⑲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⑲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㉑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목적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㉚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